

4-5-9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자연 경관 보호를 위하여 옥외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홍보물이란 학생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학생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, 교육·연구 또는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의 게시물을 말한다.

제3조(게시범위)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2.28.>

1.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, 예술, 체육행사 등
2. 총학생회 주관 행사
3. 교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이에 준하는 행사
4. 기타 허가를 받은 게시물

② <삭제 2023.2.28.>

③ 외부단체가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학생처장의 사전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게시할 수 있다.

제4조(홍보물 게시 절차) 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홍보물(발간) 및 게시허가 원에 홍보 및 게시 내용을 기재하여 지도교수 혹은 학부장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장에 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된 단체는 홍보물을 학생지원 처장에게 제출한 후 검인을 받아 게시한다. <개정 2023.2.28.>

② 검인된 홍보물에는 반드시 게시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홍보물 검인에 관한 사항은 학생처에서 담당한다.

제5조(게시물의 제한) <삭제 2023.2.28.>

제6조(게시기간) ①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, 전체기간은 2주일은 초과할 수 없다.

② 행사 주관 단체의 학생단체는 지정된 기간 내에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자진 철거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처는 해당 홍보물을 사무처에 요청하여 철거할 수 있으며, 이때 철거된 홍보물은 반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.

④ 위 제1, 제 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의뢰시에 허가를 불허한다.

제7조(보호 및 책임) ① 학생처의 검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, 훼손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에 대하여 학생처는 사무처에 요청하여 지체 없이 철거할 수 있다.

③ 이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단체는 1년간 홍보물 게시를 할 수 없다.

제8조(대외홍보) 우리 대학교 학생행사를 타교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은 홍보물에 검인을 날인하고 타교 또는 외부 단체 대표에게 게시 허가를 의뢰하는 의뢰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외부의 광고 및 게시물) 우리 대학교 내에 외부기관 또는 개인광고의 게시, 홍보물 배포시에도 그 원안을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예외) ① <삭제 2023.2.28.>

② 기타 학생처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